

# 한국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을 중심으로 -

박장규\* · 김남중\*\*

## 요 약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결국 저가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체제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 및 한국의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들의 현황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경비 업무별 실기 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경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정하며, 1차 시험 면제 대상의 축소가 요구된다. 둘째, 경비원 직무교육 과목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호·경비와 관련된 학력 및 경력자들에게 경비원 교육 과목을 일부 면제 해주거나 평가만을 통한 이수방법이 필요하다.

## The Research of Improvement and Present Conditions about Qualification System in Private Security

Park Jang Gyu\* · Kim Nam Joong\*\*

### ABSTRACT

Even though, the Korean private Security Guard's industry is developing, it did not reached at the expected quality services because of the below cost tendering from flooded small security companies, consequently low pays and fragile benefits occur therefore, the skill level and morale decreased. Also, the private security guards field's education, training and development of expert certification system is not enough. One of the plans to solve these problems can be invigorate the certification system. The improving ways are suggested after the research and the analysi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s below. First, the qualification system to become a security leader will need to add directly related subject, skill examination and continuous refresh training. Moreover, it needs accurate needed the number of the securities and the reduction of the 1st examination exemption object. Second, the qualified system to be become securities will need to strengthen on standard of qualification and focus on skill evaluation, the job education need to state by the law, also exemption for applicant who approached requirements.

**Key words : Private Security, Security Law, Security, Qualification System, Education Training**

접수일(2013년 9월 29일), 수정일(1차: 2013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2013년 10월 18일)

\*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

\*\* 사단법인 대한경호협회 전주지부

## 1. 서론

현대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발전으로 인해 각종 범죄율 또한 상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치안환경에 대한 기대는 상승하고 있어, 경찰력만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비업법'으로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되었고, 1995년 경비지도사제도 신설 및 신변보호 업무 추가, 1999년 '경비업법'으로 법령 개정, 2001년 특수경비업무 및 기계경비업무 추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8], 현재(2012년 12월말 경찰청 통계자료) 경비업체는 3,836개에 이르고 경비원은 150,03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 분야에서의 경호·경비의 수요 증가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전문적인 공급 및 교육체계와 전문 인력의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적인 성과나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즉, 민간 경호·경비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 체제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아직 초보적 단계이며,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2].

미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각종 시큐리티 자격제도가 발달하였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9.11테러사건 이후 각종 자격증 제도가 강화되고 윤리교육이 확대하는 등 질적으로 향상 되도록 노력하였다. 일본은 시큐리티 관련 자격증을 1980년대부터 민간경비산업 현장에 보급을 하였으며, 경비업무별 검정시험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이론 및 실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16].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제도인 경비지도사제도가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법률 제5124호)의 개정으로 규정되어, 1997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2012년 12월말 경찰청 통계자료) 총14회를 실시하여 18,54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원에 관련된 국가자격제도가 미흡하여 현

재는 경비원 신입교육을 통해 이수증만 발급받으면 경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경호·경비에 관련된 국가자격제도의 신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큐리티 관련 국가자격증들이 반드시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경호·경비 실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자질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공식적인 자격검증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이고, 또는 공인되지 않은 사실단체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3]. 따라서 경비업의 전문성과 민간경비원의 전문화를 통한 자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의 민간경비와 한국 민간경비 자격 제도의 현황을 조사한 후 국내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들의 발전 저해 요인들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 연구를 통해 민간경비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민간경비 자격제도 및 경비원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서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단행본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각국의 민간경비 자격제도

### 2.1. 미국

미국은 다양한 역사와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 국가를 이루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 자격제도를 직접적이고 확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미국의 자격제도는 주로 민간부문 및 자치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건강 관련 부문, 안전 부문과 같은 소수의 영역은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자격제도의 개발이나 통용 등은 업계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 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영역에서 발전해 왔다[11]. 그리고 시큐리티 부문과 관련하여 약 38개(75%)의 주에서 민간경비와 경비원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규제하고 있다. 거기다가(또는 주의 규제에 대신하여) 기초자치단체(municipal or county governments)가 민간경비를 규제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분야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특정 시설 및 공간의 경비, 조사 및 적발, 출입통제 및 전자감시, 현금 및 귀중품 수송, 군중통제, 경호, 특수견에 의한 순찰 및 탐지, 시큐리티 관련기기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 지적재산권 보호, 위협관리 및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정보분석 및 처리, 컴퓨터 관련 시큐리티, System Integration, 시큐리티 컨설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15].

미국의 자격증 중 권위 있는 것으로는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가 있다. CPP는 미국 산업경비협회(ASIS :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에서 1977년부터 실시하는 자격제도로써 경비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는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8,200(현직에서 활동하는 수는 4,000명)명이 넘는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일년에 약 900명 정도가 응시하여 66%~72%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18]. 1997년 미국산업안전협회(ASIA)가 자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CPP 자격증 소지자의 60% 이상이 20년 이상의 민간경비업체 또는 이에 상응한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체의 95% 이상이 1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수준 또한 전체의 50% 이상이 대학원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7]. CPP 자격제도는 민간자격증이지만 미국 민간경비업체 대부분이 ASIS에 가입되어 있어 그 공신력이 업계 자체적으로 검증되었으며, ASIS 자체적으로 전문자격위원회(Professional Certification Board: PCB)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시험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CPP 자격제도에 대한 응시자격으로는 학위가 없는 고졸 이하(No Degree)인 경우 9년의 경비경력(2년간은 안전업무책임자), 전문대졸업인 경우 7년의 경비경력(2년간은 안전업무책임자), 학사학위소지자인 경우 5년의 경비경력(2년간은 안전업무책임자), 석사학위소지자인 경우 3년의 경비경력(2년간의 경비경력 및 안전업무책임자),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2년의 경비경력(모든 안전업무책임자)을 갖추어야 한다[9]. 위와 같이 미국의 CPP 자격제도는 단지 단순한 민간자격에 그치지 않고, 경호경비분야의 전문가로서 경력을 가진

자에게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CPP 자격시험의 주요 8개 주제별 영역으로는 시큐리티 원칙과 실무(security principles & practices, 22.8%), 사업 구조와 실무(business principles & practices, 10.9%), 개인 시큐리티(personnel security, 9.9%), 물리적 시큐리티(physical security, 24.4%), 정보 보호(information security, 5.5%), 응급상황 실무(emergency practices, 8.5%), 조사(investigations, 12.5%), 관련법규(legal aspects, 5.3%)이다[20].

경비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의 합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필수과목은 비상계획, 수사, 법률상식, 개인경호, 신변보호 중요정보관리, 경비관리, 재산보호 등으로 경비와 손실예방에 관련되는 200문항과, 선택과목으로 13개 과목에서 선택한 25개 문항 총 225문항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민간경비관련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자격증제도 및 교육과 훈련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민간경비원에 대한 자격증 및 훈련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는 23개 주에 이르고 있다[10]. 미국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주별로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입경비원의 경우 최소한 16시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중요시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높은 이직율, 비효율적인 업무수행, 낮은 승진기회와 훈련수준, 저임금 등과 같은 경비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1]. 이와 같은 자격증 제도는 시큐리티 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립된 것으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업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과 관련된 규정사항에서는 자격증 지원자, 유자격 회사, 자격증 소지에 있어서 변경의 고지, 자격증 갱신, 자격증 증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자격증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13].

미국의 민간 경비원의 선발은 한국과 유사하나 경비원의 교육과 훈련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CPP 자격제도 중 시험과목이 세분화 되어있고, 실무과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 중 학벌에 관한 내용이 세분화 되어 있다. 또한 경비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한다.

## 2.2. 일본

일본의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혼잡경비업무, 운반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의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설경비업무는 상주경비업무, 순회경비업무, 보안경비업무, 공항보안업무, 기계경비업무로 구분된다. 그리고 혼잡경비업무는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기타 혼잡경비업무로 구분되며, 운반경비업무는 귀중품운반경비업무와 핵연료물질 등의 위험물 운반경비업무로 구분되어 있다[8].

일본은 경비업자와 경비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검증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특히 경비원의 경우 경비원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분야별 자격시험이 있으며, 이를 통과하는 자에 한하여 경비원으로서의 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일본 경비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안위원회는 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그 종별에 따라 경비원이 되려고 하는자에 대하여 그 지식 및 능력에 관한 검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1]. 일본의 경비원에 대한 검정 제도는 경비원 개개인의 경비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검정제도만이 경비원의 경비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합격자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자격취득자를 배려하고자 하고 있다[14].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경비원들을 검정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더욱 경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자격제도는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기계경비업무관리자, 경비원검정제도 등과 같은 자격제도가 있고, 검정제도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경비원 검정제도 시험 합격자에게는 1급 및 2급 민간경비원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공항보안경비업무 검정(1급)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출제범위의 경우에는 총 7개 영역 62개 항목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기시험에서는 금속탐지

기·X선투시기·휴대금속탐지기(HMD)·폭발물 자동 검사장치(EDS)·액체물 검사장치 등의 조작요령과 경계봉·방패·호신술의 응용뿐만 아니라 영어회화와 응급구급법까지 포함하고 있으며[16], 이러한 실기시험의 실시는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 운반경비, 귀중품 운반경비, 혼잡경비 등도 마찬가지로 실시하는 교통유도경비,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 운반경비업무, 귀중품 운반경비업무로 구분되며, 검정방법으로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서 강습을 받고 수료하거나,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 경비원 검정제도의 검정 종별로는 혼잡경비업무, 시설경비업무, 공항보안업무, 교통유도업무,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 운반경비업무, 귀중품 운반경비업무로 구분되며, 검정방법으로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서 강습을 받고 수료하거나,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검정을 통과한 경비원은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신입교육과 현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교육의 경우 기본교육 15시간, 업무별 교육시간 15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현임교육으로는 6개월마다 기본교육 3시간, 업무교육 5시간을 현장실태를 중심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4]. 기본 교육과목은 경비업무실시의 기본원칙, 경비원 자질향상, 경비업법, 기타 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필요한 법률교육, 사고발생 시 경찰기관 연락 및 응급조치 요령, 호신용구의 취급 등이며, 업무별 교육은 강의방법과 실기훈련방법에 의해 지도교육 책임자 또는 당해 교육에 관해서 지식경험이 있는 자가 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은 5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5].

<표 1>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검정 현황

구분	1급 검정취득자 (2008년중)	2급 검정취득자 (2008년중)
공항	2,410(475)	4,002(1,103)
시설	2,743(713)	24,618(4,308)
혼잡	17(15)	5,686(2,054)
교통	4,019(381)	49,311(10,134)
핵연료 물질 등	74(16)	343(90)
귀중품	2,577(442)	19,512(3,027)
계	11,846(2,042)	103,472(20,716)

자료 : 일본경찰청 생활안전국(2009)

<표 1> 일본 경찰청 생활안전국(2009)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중 검정취득자 수는 1급 검정 총 11,846명, 2급 검정 총 1032,4722명에 이른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민간경비원의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3. 영국

영국은 민간경비규제에 대한 제도정립의 일환으로 1997년 ‘경비업관련정부제안서’가 공포되었고, 2000년에는 경비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01년 영국의 경비업에 대한 법적 규제인 ‘민간경비산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 PSIA)’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 내무부에서 독립된 보안산업위원회(The Security Industry Authority : SIA)가 설립되면서 민간경비업에 관한 인·허가 및 자격검증의 강화와 필수교육시간 제정 등의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게 되었다.

SIA는 산업내의 모든 경비원, 감독관, 관리자, 지도자에 대한 강제적인 허가제도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훈련과 지도감독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에 의해 업체들을 감시 및 인허가를 위한 자발적인 승인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SIA의 위임을 받은 공인단체인 국립경비조사청(National Security Inspectorate : NSI)이 맡고 있다[8]. SIA의 자격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격시험과 기본교육이 필수이지만, 차량주차·견인분야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초기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만 감독권 행사를 하던 것을 2007년 11월부터 스코틀랜드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SIA는 민간경비원 자격을 업무별로 7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현장직(front line)과 비현장직(non front line)으로 나누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19]. 그러나 자격이 없는 경비원의 불법적 경비업무와 무자격의 경비원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한 경비회사, 그리고 경비원 자격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벌금과 구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2012년 자격증을 갖춘 분야별 민간경비원의 수는 <표 2>와 같으며, 2006년 3월 자격증 소지자의 법적 의무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와 같은 자격증은 ‘적합성’을 갖춘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적합성이란 범죄기록국

(Criminal Records Bureau)을 통해 전과 기록 확인과 내무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부령에 의한 요건들(최소한의 훈련 기준과 행동규정의 준수 등)을 들 수 있다. 출입관리원의 경우 법률이 기준 징역등록제의 유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식의 자격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내무장관의 부령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7]. 영국은 민간경비에 대한 행정규제 및 감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 신설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기계경비에 대한 경찰의 단계적 출동 대응, 오경보에 대한 경찰통제, 지역치안 일부에 대한 민간경비 역할 분담 등이 우리나라 경비업의 발전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8].

<표 2> 영국의 민간경비 자격증 현황

구분	자격증 소지자	유효 자격증	자격증 취소	신청거부
현금호송	16,209	10,702	71	141
신변보호	13,544	8,568	113	379
출입감시	478,911	211,378	14,941	8,835
열쇠관리	알수없음	223	6	7
공공감시	65,738	34,576	640	744
일반경비	216,800	104,622	8,957	6,382
차량견인·도난방지	7,040	1,272	39	335

자료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2.

## 3. 한국의 민간경비 자격제도

### 3.1. 경비지도사 자격제도

경비수요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전제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5년 경비업법의 5차 개정으로 신설되어, 1997년부터 경찰청 소관으로 최초 시행하게 되었다. 경비업법 제12조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각 경비지도사의 직무들은 경비업법 제12조 제2항 관련,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고,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2(제12조 제3항 관련)에 명시되어 있는 시험 과목을 준비하여 응시 후 합격해야 한다. 또한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면,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2(제9조 제1항 관련)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현재(2012년) 전국적으로 일반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6개소, 기계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1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4년 경찰청 부설 치안 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설립된 경비지도사 제도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과 민간경비산업의 질적·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경비원 지도책임자 및 기계경비업무 지도책임자제도’를 변형·도입한 것이다[10].

<표 3> 경비지도사 합격자 현황 (단위:명)

회차 년도	실행기관	기계경비	일반경비	합격인원
1회 1997	경찰청	237	2,161	2,398
2회 1999		690	7,205	7,875
3회 2001	한국산업인력공단	81	553	634
4회 2002		62	734	796
5회 2003		86	683	769
6회 2004		61	586	647
7회 2005		61	609	670
8회 2006		61	658	719
9회 2007		62	698	760
10회 2008		68	604	672
11회 2009		72	594	666
12회 2010		63	579	642
13회 2011		61	312	673
14회 2012		68	533	621
합계			1,713	16,809

자료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2012)

이 제도는 <표 3>과 같이 1997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총 14회를 실시하였으며, 경비업법에 경비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반드시 선임·배치해야 한다는 법령이 적용되어 이 자격제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초 자격시험(1997)은 경찰청에서 직접 주관 및 시행하였으며, 2회(1999)까지 10,273명을 합격자로 선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합격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과 2년에 한 번씩 자격검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제3회(2001)부터는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험위탁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되었으며, 인원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험은 매년 1회, 합격자는 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으로 정하여 총 600명으로 제한하였다. 3회부터 14회(2012)까지 8,29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총 18,522명에 경비지도사 자격을 수여하였다.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로는 경비업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으며,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와 허위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증을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2 경비원 자격제도

경비원 선발의 경우 경비지도사 제도와는 달리 일정기준의 교육을 이수하였음이 증명되면 현장배치가 가능한 ‘교육이수제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비업자(특수경비업자 포함)가 필요인원을 우선 선발하고 그 대상에게 필요교육 및 훈련을 습득하게 한 후 선임·배치하는 형태로서, 그 방법과 기준은 경비업법에(제13조) 명시되어 있다. 이때 필요한 교육비용의 경우 경비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교육은 경비업상의 필요인력 및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경비협회에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협회로부터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교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후 교육관련 제도가 개정(2005)되면서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변경되었다. 지정교육기관의 수는 현재(2010년) 일반경비원 교육 45개소와 특수경비원 교육 8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경비원 교육은 일반경비원 교육과 특수경비원교육으로 분류가 된다. 일반 경비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2006년부터 경비업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론교육 7시간, 실무교육 18시간, 기타 3시간을 포함하여 총 28시간을 실시하고 있지만, 2

006년 이전의 이론 교육은 형법 및 형사법,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이었고, 실무교육은 시설보호, 불심검문요령, 소방 등이었으며, 무술교육은 기본훈련 및 호신술 등을 포함하여 15시간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수경비원이란 경비업법 제2조의 특수경비업무, 즉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원을 말한다.

특수경비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2006년부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론교육 15시간, 실무교육 69시간, 기타 4시간을 포함하여 총 88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도까지 이론교육은 헌법 및 형사법,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민간경비론 이었고, 실무교육은 기계경비실무, 경찰관 직무집행법(불심검문 포함), 시설경비(야간경비 포함), 소방, 정보보호, 보안업무, 민방공(화생방 포함), 총기조작, 총검술, 사격, 예절 등이었으며, 무술교육은 체포술 및 호신술 등의 교육과목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정신교육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현재의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과 같다.

<표 4> 한국 민간경비의 법인 및 경비원 현황

년도	법인 수	허가 업종별 현황						경비원 수
		업종 계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 보호	기계 경비	특수 경비	
2012	3,836	4,556	3,718	41	527	148	122	150,030
2011	3,651	4,381	3,529	45	540	152	115	146,286
2010	3,473	4,151	3,351	52	514	140	94	142,363
2009	3,270	3,906	3,144	50	489	139	84	146,805
2008	3,043	3,628	2,923	51	446	146	62	142,457
2007	2,834	3,387	2,728	52	416	138	55	135,400
2006	2,671	3,317	2,549	46	360	137	45	127,620
2005	2,515	2,957	2,401	44	334	138	40	122,327
2004	2,322	2,669	2,192	44	262	140	31	105,697
2003	2,163	2,496	2,031	53	217	159	36	104,872
2002	2,051	2,388	1,963	62	187	150	26	107,963
2001	1,929	2,224	1,874	41	154	134	21	97,117

자료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2012년 12월 31일)

현행 경비업법 제8차 개정(2001년 4월 7일)으로 인해 기계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가 신설되면서 경비업의 업무 종류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5종류로 분류된다.

현재(2012년)까지 민간경비 법인 및 경비원 현황은 <표 4>와 같으며, 위와 같은 일반경비원 교육과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후 5종류의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표 4>의 경비원의 통계는 경비 관련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활동하는 경비원의 통계이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비원들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한국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4.1. 경비지도사 자격제도

#### 4.1.1. 시험과목의 문제

우선 법학개론의 경우 방대한 법학개론 내용 중에서도 민간경비 직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특별법인 경비업법이 시험과목에 있기 때문에 법학개론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해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시험과목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일반경비지도사 1차 시험과목에는 민간경비론과 경비업법으로 2차 시험과목에는 경호학을 기본과목을 하고, 선택과목에 법학개론, 소방학, 범죄학으로 수정하거나,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업에 선임·배치되므로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으로 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sup> 기계경비지도사 1차 시험과목에도 일반경비지도사와 같은 과목으로 하고, 2차 시험과목에는 기계경비론을 기본과목으로 하며, 선택과목에 기계경비기획, 기계경비설계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비지도사는 5개 경비업무에 선임·배치될 뿐 청원경찰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청원경찰법이 포함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1.2. 필기시험 중심의 선발 방식 문제

1) 예를 들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항공보안 등

현행 일반경비지도사는 필기시험만으로 평가한 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비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필기시험 위주의 자격증 취득 방식은 다양한 경비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경호경비 관련 졸업자 및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경비원들을 지도·감독하거나 돌발적인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표 5> 경비지도사 직무

구분	직무내용
일반 경비 지도사	①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월1회 이상 수행 ②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월1회 이상 수행 ③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기계 경비 지도사	위의 ①②③과 동일 ④기계경비업무에 관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월1회 이상 수행 ⑤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월1회 이상 수행

자료 : 경비업법 제12조 제2항 관련, 동법시행령 제17조

<표 5>와 같이 경비지도사의 직무 중 ②③④는 현장 실기지도가 필요한 내용이 있고, 기계경비지도사 시험과목 중 기계경비기획 및 기계경비설계는 실기에 근접한 과목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일반경비지도사의 실기능력 여부를 평가해야한다. 미국은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자격시험의 주요 8개 주제별 영역 일부에 실기시험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의 민간 경비 관련 시험은 급수별로 나뉘어 다양한 항목에 실기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시험에 실기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일부 변경 또는 추가해야한다. 그러나 실기시험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 후 이루어지는 교육을 실기 위주의 교육과 평가로 전환해야한다.

### 4.1.3. 교육의 문제

경비지도사는 시험에 합격하고 44시간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교육 과목 중에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2(제9조 1항 관

련)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이 이미 필기시험에서 어느 정도 습득한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민간경비각론(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운용관리,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인력경비개론)등을 재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재교육은 자칫 흥미가 없어 교육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비지도사 평가 중에서 시험이 필기위주였다면, 교육은 경비업무별 실기위주와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련된 리더십, 위기관리, 교육기법 등의 과목으로 편성하여 소정의 경비지도사 직무와 연계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규정이 없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큐리티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즉 치안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비업 관련 법령의 변경,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계경비장비의 변화 등이다. 따라서 소정의 기간을 설정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 4.1.4. 시험합격자 제한의 문제

<표 6>의 제7-8회 경비지도사 합격자 분포를 살펴보면 경비업 종사자는 전체합격자 인원의 267명으로 19.8%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와 반대로 경찰공무원 시험의 가산점 획득을 위해 지원한 학생 및 기타 구분에 속하는 졸업생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생이나 수험생들이 시간적 접근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표 4>와 같이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경비회사 총수 3,836개, 그리고 그 산하에서 종사하는 150,030명의 경비 종사자의 교육 및 지도를 담당해야 할 경비지도사는 <표 3>와 같이 산술적으로 보아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경비업법상 경비회사 근로자 200명 이상부터 한명의 경비지도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조건에 비례하면 부족한 인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표 6>와 같이 전·현직 경찰과 군인 그리고 경찰공무원 시험 가산점 획득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 현재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의 제한 인원은 경비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에 불균형을 초래하

2) 보통 3-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근무연한과 보수교육이수를 기준으로 경비지도사를 1급-3급으로 등급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경비지도사 합격자 분포 (단위: 명)

구분	합계	직업별						학력			
		경찰관		군인	학생	경비업 종사자	기타	4년제 이상	2년제 이상	고졸	기타
		현	전								
2006 제8회	719	48	21	88	98	142	322	413	102	163	41
2005 제7회	670	57	29	92	76	125	291	377	103	158	32
합계	1,479	105	50	180	174	267	613	790	205	321	73

자료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2007)

고 있으며, 현재 경비회사에서는 형식적으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도 취업의 어려움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은 우리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비지도사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비지도사 시험 계획을 철저히 하고, 형식적인 경비지도사 선임에 관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경비지도사협회와 정부 유관기관들은 노력해야 한다.

#### 4.1.5. 1차시험 면제 대상의 문제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항목 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다”와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 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다”를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대상자를 규정하여 공무원 특혜의 오해 소지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경비회사의 경비지도사 선임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경비지도사의 전문성과 민간경비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및 5년 이상인자”에 한해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호경비 관련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는 경호학을 경호학개론 및 경호학세미나, 경비업법을 용역경비업법 및 경호경비관계법, 민간경비론

을 민간경호경비론 및 민간경비세미나 등으로 과목 명칭을 설정하고 있지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험 과목과 명칭이 정확하게 동일해야만 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중 민간경호경비 감독 기관 등의 부서에서 2년 이상재직한다”로 변경되어야 하고, “헌병 병과 및 경호 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다”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의 시험과목이란” 과목의 명칭과 무관하게 “민간경호경비에 관련된 3과목 이상 이수한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4.2. 경비원 자격제도

#### 4.2.1. 경비원 교육 및 면제

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을 구분하여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경비원의 경우 신입교육 28시간과 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수경비원의 경우 신입교육 88시간과 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경비원 교육은 경비업무별로 교육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 과목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신변보호 분야는 총 13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별로 이수해야 하는 모듈의 차이가 있으며 모듈에 대한 과목과 교육시간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각 경비업무별로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12]. 따라서 일반경비의 경우 각각의 경비업무별로 교육을 세분화하고,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직무교육 과목을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하며, 일본 경비원 교육과 같이 현장중심의 교육과 각 업무별로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검증된 교관들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경비업계와 국민의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도 일부 교육을 면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교육을 이수한 후 1년간 정상적인 경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개선 방향으로는 경호 관련 학과, 4년제 대학교, 대학원, 관련업종 경력자 등에게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거나 평가만을 통한 교육이수 방법을 제안한다.

## 5. 결 론

우리나라는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산업은 활발하게 성장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경비지도사제도 신설, 교육제도개선, 경비업법으로 법령 개정, 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업무·특수경비업무 추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더욱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여 현재(2012년 12월말) 경비업체는 3,836개에 이르고, 경비원은 150,030명에 이른다.

미국의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경우 시험과목이 세분화 되어있고, 실무과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 중 학벌에 관한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경비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경비원의 선발은 한국과 유사하나 경비원의 교육과 훈련을 중요시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 또한 민간경비원의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간경비 관련 교육 및 훈련 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사료되어 민간경비 자

격제도 연구와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단행본, 주요국가 및 한국의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들의 현황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시험과목의 문제, 필기시험 중심의 선발방식의 문제, 교육의 문제, 시험합격자 제한의 문제, 1차 시험 면제대상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경비 업무별 실기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경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정하며, 1차 시험 면제 대상의 축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경비원 직무교육 과목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호·경비 관련된 학력 및 경력자들에게 경비원교육 과목을 일부 면제 해주거나 평가만을 통한 이수방법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아간다면, 국민의 안전을 충족시키는 민간경비산업으로 거듭나 더욱 질적·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길훈,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p.42, 1999.
- [2] 공배완, “한간경호·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 제고”,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9권, 제2호, p.5, 2005.
- [3] 공배완, “한국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2권, p.53, 2006.
- [4] 공배완, “한국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민간경비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제28권, pp.24-25, 2007.
- [5] 김원기·이효민, “민간경비원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교육훈련 강화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제12권, p.42, 2009.

- [6] 김태민·강영길, “한국경비원 관리자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제6권, 제1호, p.194, 2009.
- [7] 문입표 (2008). 「한국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실태와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8] 박동균·이민형, “한국 민간경비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제17권, p.13-20, 2011.
- [9] 박준석, “민간경호경비보안관련 전문자격제도의 도입방안 모색”, 한국민간경비학회, 제9권, p.77, 2007.
- [10] 박준석·박대우, “한국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제7권, p.191-212, 2004.
- [11] 안황권,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서울: 진영사, p.153-165, 2007.
- [12] 이성기·김학경, “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0권, p.108, 2012.
- [13] 이윤근,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집, 제27권, p.319-320, 1999.
- [14] 이윤근, “민간경비원론”, 서울: 엑스퍼트, p.242-243, 2001.
- [15] 이창무, “한국과 미국의 민간경비 성장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제2권 p.273-289, 2003.
- [16] 조용철, “외국 민간경비원의 자격증 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시큐리티 자격 시험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 제10권, p.133-136, 2007.
- [17] 조용철·김순석,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6권, p.346, 2009.
- [18] 최선태, “민간경비산업의 자격제도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p.42, 2000.
- [19] 최정택, “민간경비 자격검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8권, p.151, 2009.
- [20] ASIS (2009). Professional Certifications in Security - Applicant Handbook. ASIS International.

**[ 저 자 소 개 ]**

**박 장 규 (Jang-Gyu Park)**



1973년 3월 원광대학교학사  
 1990년 3월 우석대학교석사  
 2006년 8월 전주대학교박사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 교수

email : 2009245@naver.com

**김 남 중 (Nam-Joong Kim)**



2003년 3월 전주대학교학사  
 2006년 2월 단국대학교 석사  
 2010년 8월 전주대학교박사  
 사단법인 대한경호협회 전주지부장

email : jamsaco@hanmail.net